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하부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3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과 국제관세협력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정원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빅데이터 분석팀장·연구개발장비팀장”을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장·연구개발장비팀장”으로,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 및 데이터담당관”으로, “빅데이터분석팀장은”을 “인공지능혁신팀장은”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7. 관세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관리

9. 한국관세정보원의 기관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제3항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
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 제21호
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관리담당관”을 “데이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제도의 연구·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6.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무역통계업무 총괄
8. 통계 작성·교부 대행 기관 지정 및 관리
9.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
10.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1.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13.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14.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빅데이터분석팀장”을 “인공지능혁신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빅데이터”를 “인공지능·빅데이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인공지능·빅데이터”로, “발굴,”을 “발굴, 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행정관련 인공지능·빅데이터 도입 총괄 관리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세국경관리 감시 장비 예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

제3조의3제7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터넷통관포털”을 “인터넷통관포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의 저장 보관 관리

10.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12.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13.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4.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5. 통신망 및 통신장비 관리
16. 한국관세정보원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17.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19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9.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0.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2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34조제6항 중 “3명(6급 2명)”을 “4명(6급 3명)”으로 한다.

제36조 중 “관세청과 그”를 “관세청”으로 한다.

별표 1의 양산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삼남면”을 “삼남읍”으로 한다.

별표 4 중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를 “4”로 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를 “4”로 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공업서기보 “6”을 “7”로, 열관리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8의2 중 공업서기보 “5”를 “6”으로, 열관리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0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2호) 가목2)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총리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정보관리담당관”을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총리령 제91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혁신팀은 2028년 9월 0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혁신팀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혁신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공항세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서동·운북동·중산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 항동(인천해상교환국에 한정한다)
서울세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한다)·광명시
부산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용당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웅천동·웅동1동·웅동2동에 한정한다)
인천세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공항세관·김포공항세관 및 안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대구세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세관 및 구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광주세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에 한정한다)·홍성군·태안군
김포공항세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에 한정한다)
수원세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안산세관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는 제외한다)·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

		동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김포시(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안양세관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천안세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은 제외한다)·예산군
청주세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대전세관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세관·평택세관 및 군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속초세관	강원특별 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동해세관	강원특별 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해공항세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김해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
용당세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남구·수영구(해상과 부두는 제외한다)·해운대구 및 기장군(해상은 제외한다)·북구·사상구, 경남 양산시(부산국제우체국에 한정한다)
양산세관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읍 방기리·삼동면 조일리에 한정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성산구(마산항 부두는 제외한다)·김해시·밀양시
마산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합안군
경남남부세관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고성군(하이먼은 제외한다)

경남서부세관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하동군(금성면은 제외한다)·산청군·함양군·거창군·사천시·합천군(대구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창녕군·의령군·남해군·고성군 하이면
울산세관	울 산 광역시	울산광역시(양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구미세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의성군·상주시·문경시·칠곡군(약목면·북삼읍·석적읍에 한정한다)
포항세관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영양군·청송군
광양세관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에 한정한다)
목포세관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목포시·함평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여수세관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
군산세관	전북특별 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제주세관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세관	전북특별 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안군·고창군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60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359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4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46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3

관세주사	80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관세주사 또는 공업주사	1
전산주사	8
공업주사	1
해양수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5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관세주사보	86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전산주사보	7
관세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8
전산서기	3
방송통신서기	4
관세서기보	7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68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367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47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3
관세주사	95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관세주사 또는 공업주사	1
전산주사	8
공업주사	1
해양수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5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관세주사보	77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전산주사보	7
관세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8
전산서기	3
방송통신서기	4
관세서기보	7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총계	4,867
일반직 계	4,867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서기관	3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12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8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3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777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3
공업주사	20
방송통신주사	16
해양수산주사	40

식품위생주사	3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 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관세주사보	926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전산주사보	7
공업주사보	59
방송통신주사보	12
해양수산주사보	62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식품위생주사보	1
운전주사보	2
위생주사보	1
관세서기	1,053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관세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전산서기	5
공업서기	24
방송통신서기	22
해양수산서기	98

운전서기	2
위생서기	1
방호서기	1
관세서기보	741
관세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관세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
공업서기보	7
방송통신서기보	21
해양수산서기보	74
운전서기보	67
위생서기보	16
조리서기보	15
방호서기보	28
기록연구사	6
기계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60
통신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22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5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3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67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총계	4,874
일반직 계	4,874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서기관	3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139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8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858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6
공업주사	22
방송통신주사	19

해양수산주사	45
식품위생주사	3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재 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관세주사보	1,024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전산주사보	8
공업주사보	64
방송통신주사보	13
해양수산주사보	68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식품위생주사보	1
운전주사보	2
위생주사보	1
관세서기	955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관세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전산서기	1
공업서기	17
방송통신서기	19

해양수산서기	90
운전서기	2
위생서기	1
방호서기	1
관세서기보	651
관세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관세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
공업서기보	6
방송통신서기보	20
해양수산서기보	70
운전서기보	67
위생서기보	16
조리서기보	15
방호서기보	28
기록연구사	6
기계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60
통신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22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5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3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67

[별표 10]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6조 관련)

1.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3과	1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1명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생략)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u>정보 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 당관·빅데이터분석팀장·연구 개발장비팀장</u> 및 <u>시스템운영팀 장</u> 을 두며, <u>정보데이터기획담당 관 및 정보관리담당관</u> 은 부이사 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으로, <u>빅데이터분석팀장</u> 은 과 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u>연구개발장비팀 장 및 시스템운영팀장</u> 은 과학기 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	② ----- <u>정보 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 공지능혁신팀장·연구개발장비 팀장</u> ----- ----- <u>정보기획담당관 및 데 이터담당관</u> ----- ----- ----- <u>인공지능혁신팀장</u> 은 -- ----- ----- ----- ----- ----- ----- ----- -----.
③ <u>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u> 은 다 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 책관을 보좌한다.	③ <u>정보기획담당관</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관세행정정보시스템</u> 의 운영 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5.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 --- ----- --

6. <u>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7. <u>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u> 8. <u>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u> <u><신 설></u> 9. <u>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확산 및 동향조사</u> <u><신 설></u> 10. <u>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1. <u>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12. <u>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13. (생략) 14. <u>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제도의 연구·기획 및 개발</u>	6.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u> 7. <u>관세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관리</u> 8. <u>전자문서중계사업자</u>----- ----- 9. <u>한국관세정보원의 기관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10.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 -- -- 11.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2.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 -- -- <u><삭 제></u> 13.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u>에 관한 사항</u>	
<u>15.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u>	<u><삭 제></u>
<u>16. 무역통계업무 총괄</u>	<u><삭 제></u>
<u>17.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 리·제공 및 공표</u>	<u><삭 제></u>
<u>18. 무역통계부호의 관리</u>	<u><삭 제></u>
<u>19.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 항</u>	<u><삭 제></u>
<u>20.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u>	<u><삭 제></u>
<u>21.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u>	<u><삭 제></u>
<u>21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 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 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u><삭 제></u>
<u>21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u><삭 제></u>
<u>22. (생 략)</u>	
<u>④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u>	<u>14. (현행 제22호와 같음)</u> <u>④ 데이터담당관</u> ----- ----- -----.
<u>1.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 페이지의 운영</u>	<u>1.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 · 제도의 연구·기획 및 개발 에 관한 사항</u>

<u>2.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u> 3. (생략) <u>4.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u> <u>5.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u> <u>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u> <u>7. 통신망 관리</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⑤ <u>빅데이터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u>	<u>2.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u> 3. (현행과 같음) <u>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u>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u>6.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u>7. 무역통계업무 총괄</u> <u>8. 통계 작성·교부 대행 기관 지정 및 관리</u> <u>9.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u> <u>10. 무역통계부호의 관리</u> <u>11.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u> <u>12.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u> <u>13.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u> <u>14.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u> ⑤ <u>인공지능혁신팀장</u>----- -----
---	---

을 보좌한다.

<신 설>

1.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
집·관리
3.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인
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 (생 략)

<신 설>

⑥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
을 보좌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⑦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생 략)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
련된 용역관리

-----.

1. 관세행정관련 인공지능·빅
데이터 도입 총괄 관리 및 사
업수행에 관한 사항

2. -----
-- 인공지능·빅데이터 ---

<삭 제>

3. ----- 인공지능·빅
데이터 ----- 발굴, 분석 -

4. (현행과 같음)

5.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⑥ -----

-----.

1. ~ 5. (현행과 같음)

6. 관세국경관리 감시 장비 예
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

- ⑦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u>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u>	3.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u>관세행정데이터의 관리</u>	6.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의 저장 보관 관리</u>
7. <u>인터넷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u>	7. <u>인터넷통관포탈</u> -----
8. <u>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u>	8.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u><신설></u>	10. <u>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u>
<u><신설></u>	11. <u>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u>
<u><신설></u>	12. <u>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u>
<u><신설></u>	13. <u>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u>
<u><신설></u>	14. <u>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u>
<u><신설></u>	15. <u>통신망 및 통신장비 관리</u>
<u><신설></u>	16. <u>한국관세정보원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u>

<신 설>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②
(생 략)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 18.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9. (생 략)

④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관한 지도·감독

17.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9.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
항

20.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
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2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
항

2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
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3. (현행 제19호와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7. <u>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 항</u>	<u><삭 제></u>
8. <u>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 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u>	<u><삭 제></u>
9. <u>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 항</u>	<u><삭 제></u>
10. <u>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 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 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3명(6급 2명, 7급 1명)</u>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 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 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⑥ ----- ----- ----- <u>4명(6급 3명)</u> ----- ----- ----- ----- ----- -----.

⑦ (생 략)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u>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u>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 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총리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 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 사무는 <u>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u> 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 는 <u>정보관리담당관</u>에서, 공정무 역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 책과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 관사무는 <u>국제협력총괄과</u>에서 각각 수행한다. 총리령 제915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u>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u>관세청</u> ----- ----- -----. 총리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u>정보기획담당관</u>----- ----- ----- <u>데이터담당관</u>----- ----- ----- -----. 총리령 제915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삭 제></u>
--	--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분석팀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빅데이터분석팀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빅데이터분석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 · <u>5</u> ·	· · <u>4</u> ·	-1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 ·	<u><신설></u> · ·	<u>1</u> · ·	+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 • <u>5</u> •	• • <u>4</u> •	-1
관세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물주사보 • •	<u><신설></u> • •	<u>1</u> • •	+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공	업	서기보	.	.	.	+1	
			.	.	.		
			<u>6</u>	<u>7</u>			
열	관	리운영서기보	.	.	.	-1	
			.	.	.		
			<u>5</u>	<u>4</u>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공업서기보	.		.		.	+1	
	.		.		.		
			<u>5</u>		<u>6</u>		
열관리운영서기보	.		.		.	-1	
	.		.		.		
			<u>5</u>		<u>4</u>		
	.		.		.		
	.		.		.		